

1. 개정이유

건설기계 대여업 또는 매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시·군·구에서 주기장 보유 확인(처리기간 7일)을 받은후 대여업 또는 매매업 등록신청(처리기간 10일)을 하고 있어 민원인이 이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등록과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등록이전 조항을 삭제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여
등록이전 연계규정 정비(안 제7조, 별지 제8호서식)
- 나. 사무실과 주기장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경우 대여업 또는 매매업 등록시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7조, 제6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변경신고서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등록이전신고서”를 “변경신고서”로 한다.

제57조제1항제4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무소와 주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일한 경우 별지 제29호 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무소와 주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일한 경우 별지 제29호 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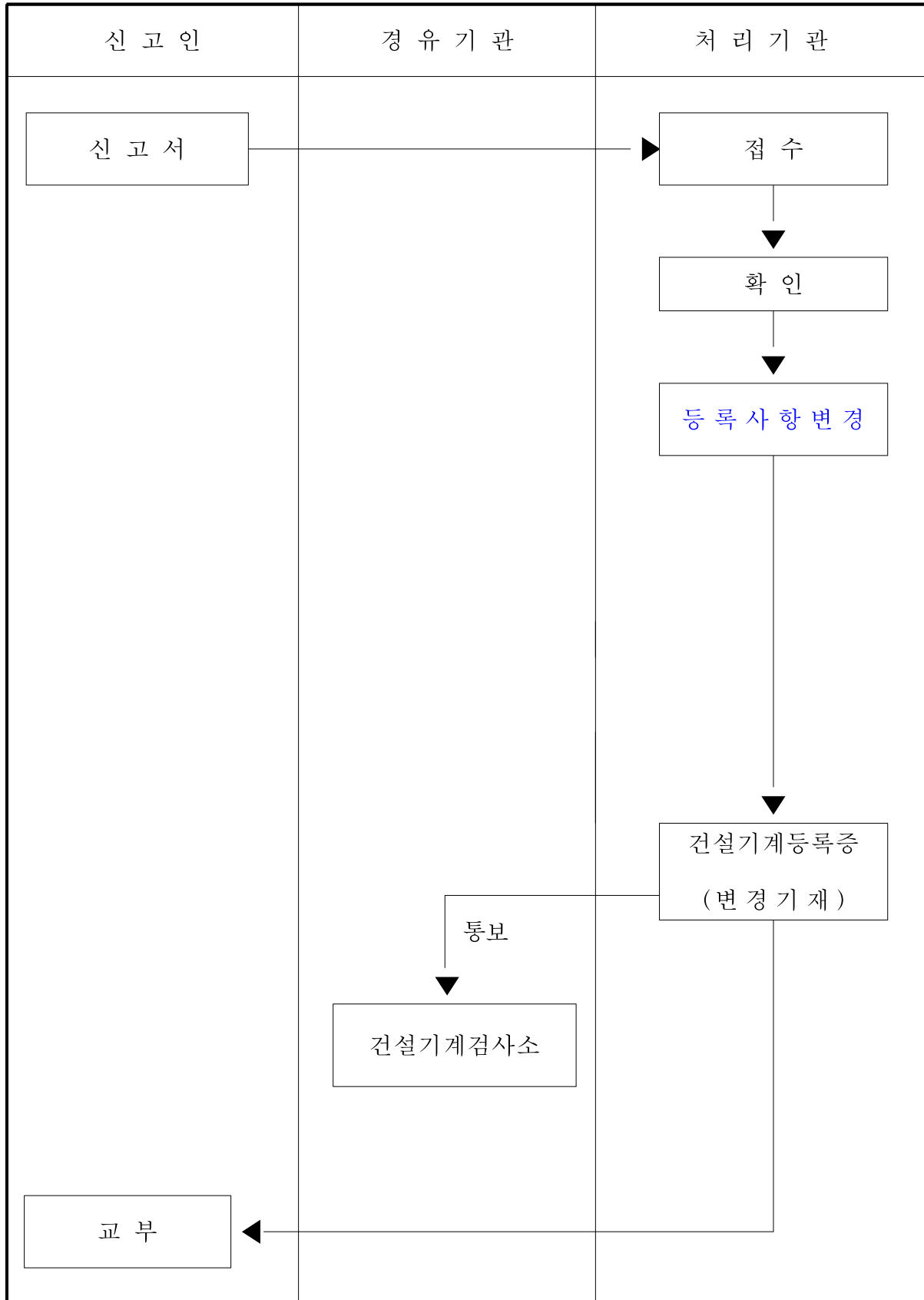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설기계명			건설기계등록번호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 지 사 귀하					
구 비 서 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1,000원
	2. 건설기계등록증				
	3. 건설기계검사증				
	4.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뒷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등록사항변경신고서등) ①		제7조(등록사항변경신고서등) ①		
영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		-----		
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		-----		
사항 <u>변경신고서</u> 및 영 제6조제		--- <u>변경신고서</u> -----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		-----		
<u>록이전신고서</u> 는 별지 제8호서		-----		
식과 같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제57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①법 제21조 및 영 제13조		등) ①-----		
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		-----		
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전		-----		
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		-----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		-----		
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		-----		
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		-----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		-----		
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		-----		

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연명등록자의 제2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삭 제

2. 3. (생 략)

4.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
설보유확인서 <단서 신설>

5. 삭 제

6. (생 략)

②·③ (생 략)

제62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①법 제21조 및 영 제15조
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2. 3. (현행과 같음)

4. -----

----- . 다만, 사무소와
주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장·군수·구청장이 동일한
경우 별지 제29호 서식의 주
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2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①-----

-----.

1. 삭 제 2. (생 략) 3.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 설보유 확인서 <단서 신설> 4. (생 략) ②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 ----- ----- ----- ----- . 다만, 사무소와 <u>주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장·군수·구청장이 동일한 경우 별지 제29호 서식의 주 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u>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